#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오기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347

발의연월일: 2022. 4. 20.

발 의 자: 오기형 · 김민철 · 김영배

김진표 • 윤건영 • 임호선

장철민 • 조정훈 • 최기상

홍영표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동의의결 제도는 종래 2011년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, 2014년 이 법에 각각 도입되었고, 각 법률에 동의의결 절차와취소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규정을 두었음.

그런데 최근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,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,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,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률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되면서,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관하여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도록 법률개정이 이루어졌음.이에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관하여 이 법만 별도의 독자적 규정을 가지게되어,다른 법률의 경우와 이행관리 등 차이를 보이게 되었음.

이에 이 법에 따른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대해서도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여, 각 법률간 동의의

결 제도 운영에 일관성을 갖추려고 하는 것임(안 제7조의2제5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표시 ·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.

제7조의3 및 제7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동의의결 신청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5항 및 제7조의3·제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7조의2(동의의결) ① ~ ④ (생 제7조의2(동의의결) ① ~ ④ (현 략) 행과 같음) 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<신 설> 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|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. <u><</u>삭 제> 제7조의3(동의의결의 절차) ① 공 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,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 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 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 게 통지하거나, 관보 또는 공정 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 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. <u>1. 해당 행위</u>의 개요 2. 관계 법령 조항

- 3. 시정방안(제7조의2제3항 후 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 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)
- 4.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 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. 다만, 사 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 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 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.
-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검찰총장과는 협의 하여야 한다.
-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

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.

⑥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 의 신청 방법, 이 조에 따른 의 견 조회 방법, 심의·의결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 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7조의4(동의의결의 취소) ① 공| <삭 제> 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.

- 1.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 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정방 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2.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 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,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
- 3.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
-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

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의 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.

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 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 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.